

2005. 10.

제101회 임시회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보담당관실

##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기	99회	위원회	총무위원회	처리부서	공보담당관실	처리결과	추진중
----	-----	-----	-------	------	--------	------	-----

### □ 예산소요액 판단 부적정

- 시정홍보를 위한 LED 전광판 예산을 요구하면서 전광판의 규모와 질 등을 고려하여 소요사업비 산출을 정확히 한 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당초 요구액 100백만원의 50%인 50백만원을 1회 추경에 증액 요구한 것은 소요액 판단이 잘못되어 당초 목표했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 시정과 관련한 각종 시책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을 설치. 운영하고자 당초 민원동 벽면에 10.0m × 10m규격 3-color 전광판 설치 예정으로 당초예산 100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 전광판 제작 전문업체 시청방문 검토결과 민원동 설치시 홍보효과가 떨어지고 문자만 표출되는 3-color 방식의 경우 빛 반사가 심한 충주시청 광장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
- 따라서 본관입구에 Full-color 전광판 13m × 1.5m규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빛 반사시에도 운영상에 큰 문제점이 없는 등 제반사항을 종합검토하여 1회 추경시 50백만원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임
- 기존 관내 도로변에 설치된 3-color 전광판은 문자표출만 가능하나 Full-color 전광판은 도형 및 문자/그래픽/동영상 등의 표출이 가능하여 요즈음 대부분의 자차체에서 Full-color 방식을 채택(도청, 청주, 제천, 증평 등)
- 2회 추경시 예산 부족분 반영을 요구, 예산반영시 2005. 11월중 시공업체 선정 전광판 제작을 계약, 발주하여 2006. 1월중 제작 및 설치완료할 계획임

##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기	99회	위원회	총무위원회	처리부서	공보담당관실	처리 결과	완료
----	-----	-----	-------	------	--------	-------	----

### □ 책임있는 시정시책 홍보추진

- 확정되지 않은 시책이나 사업이 언론을 통해 홍보됨으로써, 시민 또는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거나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홍보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 주요시책 보도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시책이나 또는 정책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지만 기사(방송)화되는 것은 공보실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별도로 외부에서 신문, 방송사로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나 기자가 정보 등을 통해 자체 취재한 내용도 많이 있음
-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보도된 경우 이에 대한 보도대책
  - 해당 언론사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요구하는 방법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 가능

⇒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신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합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 공보실을 통하여 보도자료를 배포 및 제공하는 경우 관계부서의 정확한 자료를 통하여 사실만을 신속하게 제공·보도하여 오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임

2005. 10.  
제101회 임시회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획행정국**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목록

(총무위원회)

연번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건의)	소관부서	처리결과
계	5건 (완료 3, 추진중2)		
1	예비비 집행 부적정	기획감사과	완료
2	예산편성 부적정	"	"
3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교환근무 재검토	"	"
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부적정	회계과	추진중
5	증원회관 유휴 공간 활용대책 마련 촉구	"	추진중

# 2005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기	99회	위원회	총무위원회	처리부서	기획감사과	처리결과	완료
----	-----	-----	-------	------	-------	------	----

## □ 시정 및 건의사항

-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노인수당 및 경로연금 집행은 충분히 수요예측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65세이상 노인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지급예산 부족이라는 사유를 들어 예비비에서 110백만원을 집행한 것은 예비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 2004년도 예비비예산액은 3,303백만원이며 이중 예비비사용결정은 수리시설호우피해복구와 충주시장 보궐선거, 공무원 건강보험료, 노인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 등 28건에 2,940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854백만원을 지출하고 86백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이중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수요예측 미비와 또 3회 추경시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노인수당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노인복지사업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비 부담분 미확보예산 110백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됨
- 앞으로 예비비는 수해복구사업 등 불가피한 긴급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으며
- 예산편성시 소요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출의무가 발생되는 경비를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요령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음.

# 2005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기	99회	위원회	총무위원회	처리부서	기획감사과	처리결과	완 료
----	-----	-----	-------	------	-------	------	-----

## □ 시정 및 건의사항

-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의회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바,  
향후 예산안 의결 요구시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여야 할 것임.

## □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 예산편성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의결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같은 의회 회기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함께 예산반영을 요구하여 지적을 받았음.
  - 2005년도 사례
    - 가금 보건지소 및 동락 보건진료소 신축(국도비보조사업)
    - 지현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 충주상공회의소 소유 토지매입 등
  - 같은 회기 내 제출사유
    - 국도비보조사업일 경우 예산편성 시기에 임박해서 보조내시
    - 기타 시책결정시 사업계획수립 및 관련법 검토, 시정조정위원회의 개최 등 절차수행의 시간 소요로 인해 같은 회기내에 제출될 경우가 있음
- 앞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을 준용하여 예산편성이전에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후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음.

#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기	99회	위원회	총무위원회	처리부서	기획감사과	처리결과	완료
----	-----	-----	-------	------	-------	------	----

## □ 시정 및 건의사항

- 일본의 자매결연도시와 공무원 교환근무를 하고 있으나 교환근무에 따른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금후 교환근무 재개시에는 교환근무자의 직렬 및 담당업무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습득하여 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하기 바람

## □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 현재 일본 무사시노시와는 우호교류, 유가와라정과는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지난 3월 독도문제로 잠정 교류가 중단된 상태임.
  - 교류현황
    - 충주시 : '97.9.1 ~ '05.3.31 기간 중 6차 / 6명
    - 무사시노시 : '98.4.1 ~ '04.9.30 기간 중 5차 / 5명
    - 유가와라정 : '04.4.1 ~ '05.3.31 기간 중 1차 / 1명
- 향후 양국간, 교류도시간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류 재개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으며,  
교류 재개시 다양한 직렬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소유한 직원을 선발하여 교환 근무케함으로써 일본국의 다양한 정책이 우리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기	99회	위원회	총무위원회	처리부서	회계과	처리결과	추진중
----	-----	-----	-------	------	-----	------	-----

##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부적정

- 이미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 충주소방서 청사이전 부지를 불과 1년 3개월 만에 타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변경 사유가 있어야 하나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이미 28백만원을 집행한 상태에서 동 부지 매입을 위한 여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 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사례임

## □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부지는 당초 2003.12월 의회 승인을 받아 안림동 344-3번지 등 6필지( $13,664m^2$ )로 정하고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토지 적성 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 충주시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많은 추가예산이 소요(20억 이상)되고, 소방서에서도 소방력 접근성 용이 등을 이유로 신축 부지를 목행동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 → 부결
- 이후 사업부지 선정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당초 승인해 주신 사업 추진시기를 일실하거나 번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소방서 부지 선정에 관하여는 소방서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정 부지를 물색 하겠습니다.

#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기	99회	위원회	총무위원회	처리부서	회계과	처리결과	추진중
----	-----	-----	-------	------	-----	------	-----

## □ 중원회관 유휴공간 활용대책 마련 촉구

- 중원회관 3·4층의 일부가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바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대책을 강구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겠음

## □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 중원회관 층별 현황 및 이용 실태
  - 3층A실( $226.17\text{m}^2$ ) : 비어있음
  - 3층B실( $353.11\text{m}^2$ ) : 관광정보이용센터 ('02.1.26)
  - 4층A실( $226.17\text{m}^2$ ) : 당구장으로 대부(2003년말 대부기간 종료)
  - 4층B실( $353.11\text{m}^2$ ) : 주민자치센터 ('04.12.29)
- 위와 같이 3층A실은 비어있고 4층A실은 당구장으로 개인에게 대부하여 2003년도말 대부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대부료도 체납(18,482,610원)되고 사용물품 또한 방치되어 있어 퇴거를 종용하고 있으나 불응하고 있는 실정임
- 4층A실에 대한 우리시의 조치사항
  - 교현동 신원11차아파트 101-412 압류등기조치(2000.2.24)
  - 체납대부료 납부 및 사업장 이전 요청(4회)
  - 체납대부료 납부독촉 및 재독촉 (2회)
  - 체납 처분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조회하였으나 무재산
  - 전기와 상수도 단전, 단수조치(2004.12월)
- 4층A실은 전 대부자 물품이 방치된 상태로 향후 물품을 전 대부자가 수거토록 하고 적합한 대부자를 물색하여 대부하여 관리 하는 방안과 행정재산으로 사용 계획이 있는 부서가 있을시 관리전환 하여 활용 토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2005. 10.  
제101회 임시회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경제건설국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

## 【경제건설국】

소 속	질 문 요 지	비 고
계	5 건	
경 제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재검토</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충주시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관리업무 소홀</li></ul>	
지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문화동 취미사 불법건축물 철거 및 재발 방지 철저</li></ul>	
도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단월서부우회도로 공사구간내 단호사 문제 특단의 대책 강구</li></ul>	
교 통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삼화버스 차고지 관리감독 철저</li></ul>	

##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기	99회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처리부서	경제과	처리결과	완료
----	-----	-----	---------	------	-----	------	----

### □ 시정 및 건의사항

#### ○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재검토

- 재래시장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의 주 목적이 접근성 취약으로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에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선정시 인근 주차장 등 재래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따라서 이미 인근 봉방 새마을금고옆 주차장이 있는 무학시장의 경우 소규모의 산발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보다는 주차장 조성 이후 관리면에서 일원화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규모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바 봉방동 42-1번지 일원과 충북원예협동조합 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의 접근성, 이용시민의 편리성, 충주천 그린화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금년에 봉방동 42-1번지 일원에 약 400평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인근 사유지를 매입, 대규모 주차장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임
- 충북원협 부지 매입은 원협에서 부지 매각시 매입할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코자 함 (현재는 원협에서 부지매각 의사가 없음)

#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기	99회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처리부서	경제과	처리결과	추진중
----	-----	-----	---------	------	-----	------	-----

## □ 시정 및 건의사항

### ○ 충주시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관리 감독업무 소홀

- 복지관 1층의 주민자치센타(43평)를 어린이집 시설을 이유로 내보낸 것은 위탁관리계약 제13조의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임
- '05년 본예산에 삭감된 어린이집 시설 설치 예산을 증액하여 제1회 추경에 증액하여 요구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의 원칙에 벗어난 것임
- '04년 복지관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에 있어 당초(봉재교실운영)와 달리 실제로는 어린이집 식당집기를 구입하였음

⇒ 위탁관리계약서에 따라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 □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 복지관 1층의 주민자치센타 공간사용은 시의 권한임을 한국노총에 분명히 하였으며 지금이라도 시에서 쓸수 있는 공간이나 '06년 복지관 위탁운영계획에 동 공간의 활용방안을 시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 한노총의 예산요구시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회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선구입한 어린이집 식당집기에 대하여는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9. 27일 사회복지과로 관리 전환하여 10월중 국공립보육시설(중원어린이집외 3개소)로 분배할 계획임
- ⇒ 운영조례와 위탁관리계약서 내용을 종합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음

##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기	99회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처리부서	지역개발과	처리결과	추진중
----	-----	-----	---------	------	-------	------	-----

### □ 시정 및 건의사항

#### ○ 문화동 취미사 불법건축물 철거 및 재발방지 철저

- 문화동 1752번지 화원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영업하던 중 금번 불법건축물로 지적된 취미사의 건축물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하천 부지내 건축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 관련 법규에 의거 취미사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토록 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천점용허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 ○ 하천부지내 불법건축 행위 현황

- 적 발 일 : 2005. 04. 27
- 위 치 : 충주시 문화동 1752번지
- 용 도 : 화원조성
- 구 조 : 경량 철골조(벽체), 천막(지붕)
- 면 적 : 76.05m<sup>2</sup>(19.5mx3.9m)
- 불법행위자
  - 성 명 : 배미애(780513-2403414)
  - 주 소 : 충주시 봉방동 254번지

#### ○ 추진현황

- 불법시설물 철거 공문발송 : 2005. 05. 04
- 불법시설물 철거 촉구 공문발송 : 2005. 05. 17
- 불법시설물 미 철거로 형사 고발 : 2005. 06. 24
-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송치 : 2005. 09. 16

#### ○ 향후 추진계획

-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에서 수사중에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

##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기	99회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처리부서	도로과	처리결과	추진중

### ○ 단월 서부우회도로 공사구간내 단호사 문제 특단의 대책강구

- 달천사거리~단월삼거리간 단월서부우회도로 공사구간 중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단호사 담장문제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

### ○ 사업개요

- 위치 : 달천동 달천사거리 ~ 단월동 단월삼거리
- 사업량 : 도로확포장 L=2,700m, B=25m
- 사업비 : 79억원
- 공사기간 : 2002. 3. 27 ~ 2005. 9. 25
- 시공회사 : (합)유진건설 이선호, 케이티건설(주) 김준호

### ○ 조치계획

- 단호사 편입토지 보상금 수령 협의중(관련서류 접수 완료)
- 편입부분 도로정비 추진(인도, 자전거도로) : 년내 마무리 계획

##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2005. 10.

제101회 임시회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 지적사항 처리 결과

문화관광 복지국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

<문화관광복지국>

연번	처리요구사항(시정 및 건의)	소관부서	처리결과	비고
계	4건			
1	○ 무술축제 추진 사업비 지출 부적정	관광과	완료	총무위원회
2	○ 탄금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공사 부실	관광과	완료	총무위원회
3	○ 화장장 및 수안보 다목적운동장 기초조사 미흡	관광과 사회복지과	완료	총무위원회
4	○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악취제거대책 및 관리감독 철저	환경과	완료	산업경제위원회

##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기	99회	위원회	총무위원회	처리부서	관 광 과	처리결과	완 료
----	-----	-----	-------	------	-------	------	-----

### □ 시정 및 건의사항

#### ○ 무술축제 추진 사업비 지출 부적정

무술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민간사무국을 설치·운영하면서 관련규정 마련없이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축제예산에서 임의로 집행토록 한 것은 부적정한 보조금 관리 행위이므로 조속히 근거를 마련하여 집행하기 바람

### □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 ○ 무술축제추진위원회 민간사무국 설치근거

2005. 4. 26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사무국의 구성 및 기능, 채용, 보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시행중에 있음

#### ○ 민간단체에서 내부 사무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며

#### ○ 다만, 축제 또는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규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되, 추진위원회의 법인설립등과 병행추진 하겠음

##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기	99회	위원회	총무위원회	처리부서	관 광 과	처리결과	완 료
----	-----	-----	-------	------	-------	------	-----

### □ 탄금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공사 부실

수변 석축공사에 사용된 석재가 설계와 다른 비규격 석재가 사용되었고 석축 쌓기도 견고하지 못해 내구성이 문제가 되는 바,

전면 재시공하고 석축 끝부분의 배수관의 부실한 마무리도 재정비하기 바라며, 파고라 앞 세라믹 포장부 또한 전면 재시공하기 바람.

수변무대의 나무의자는 조임상태가 불량하므로 조치하고 2년마다 방수처리 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수변무대 앞에는 흙을 보충한 뒤 잔디를 식재하여 미관을 정비바람.

### □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 ○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시공 완료 하였음( 2005. 9. 15 )

1. 수변석축공사 석재가 설계와 다른 비규격 석재를 사용하였고 석축쌓기도 부실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울어진 석축을 규격석재로 전면 재시공 조치하였음
2. 세라믹 포장부 및 배수관로 재정비에 대해서는
  - 하자 발생된 세라믹포장은 전면 재시공하였고, 배수관로도 보수완료 하였음
3. 수변무대의 목재의자는 조임상태가 불량하므로 조치하고, 2년마다 방수처리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 목재의자는 목재의 신축에 따라 조임상태가 변화된 것으로 조임을 완료하였고 관광지내 목재시설에 대하여는 부식방지 방부처리(오일스텐)를 완료 하였음.
4. 수변무대 앞부분의 수변지역에 흙을 보충하고 잔디식재를 하라는 사항은
  - 수변무대 전면부의 수변지역에 흙을 보충하고 잔디식재를 완료하였음.앞으로 사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훼손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기	99회	위원회	총무위원회	처리부서	사 회 복지과	처리 결과	완 료

### □ 시정 및 건의사항

#### ○ 화장장 기초조사 미흡

- 화장장신축공사 사업시행전에 지형 및 지질 등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충실히 시행함으로써 설계변경 요인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기초조사가 부실하여 예산 추가 소요액이 발생됨은 물론, 당초의 사업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시 사전에 기초조사를 충실히 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 □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 설계당시 건물기초 결정을 위하여 지질조사(10공)를 실시하여 추진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지역의 악조건으로 법면(사면)의 균열과 파괴가 발생하여 원인분석과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면보강 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추가 소요사업비가 요구됨에 따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2005. 1회 추경예산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도비 24억원(국비 19.7억, 도비 4.3억)의 예산을 확보 하였음
- 완벽한 법면보강공사를 통하여 2006. 6월 완공을 목표로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공사가 완벽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 향후 대규모 사업 추진시, 지질조사에 관한 기초조사가 정밀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기	99회	위원회	총무위원회	처리부서	관 광 과	처리결과	완 결
----	-----	-----	-------	------	-------	------	-----

### □ 수안보 다목적 운동장 기초조사 미흡

화장장 및 수안보 다목적운동장 등 주요사업은 사업 시행전에 지형 및 지질등 공사시행 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충실히 함으로써 설계변경요인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기초조사가 부실하여 예산 추가 소요액이 발생함은 물론, 당초의 사업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시행시 사전에 기초조사를 충실히 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 □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 ○ 수안보 다목적운동장 설치공사는

당초 인공폭포 설치공사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다목적 운동장 설치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했으나 이를 충실히 수행치 않아, 설계변경 요인이 되어 당초사업이 목표달성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켰음

#### ○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당초목표에 미달된 잔디식재 및 산책로 개설에 대하여는 사업예산 확보후 단계적으로 완료조치 하겠음.

##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기	99회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처리부서	환경과	처리결과	완료
----	-----	-----	---------	------	-----	------	----

### □ 시정 및 건의사항

-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악취제거대책 및 관리감독 철저
  -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악취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나 투입구 쓰레기찌꺼기 방치 및 침출수 배출박스가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고
  - 그런환경의 경우 업자의 공익성에 따른 의식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예산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 검토하기 바람
  - 생산제품 및 채소쓰레기 야적장에 비가림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악취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실정이므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 주민들에게 악취발산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 완료
  - 행정처분(과태료 백만원) 및 시설개선명령 : 2005. 7. 20
  - 음식물쓰레기 투입구 보강완료 : 2005. 7. 18
  - 공장내부와 악취차단용 에어커튼 설치 : 2005. 7. 22
  - 농산물 도매시장 채소쓰레기 반입 금지조치 : 2005. 7. 14
  - 발생 채소쓰레기는 원주처리업체(미래산업(주) 엄경숙)에 위탁처리
  - 침출수 배출박스 정리완료 : 2005. 7. 25
  - 음식물쓰레기 투입부 샷터문 설치 : 2005. 8. 31
  - 보일러 냉각수 냉각탑 설치 : 2005. 8. 31
  - 생산품 보관창고 설치 : 2005. 8. 31
  - 침출수 해양투기 시범운영 : 2005. 9. 24 ~ 10. 23 (1개월간)
- 예산지원 적절성 검토
  - 2004년 악취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폐기물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악취방지시설 지원
  - 예산지원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한것인 만큼 시설을 철저히 가동토록 지도

2005. 10.

제101회 임시회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 지적사항 처리 결과

농업정책국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목록

(농업정책국)

연번	처리요구사항(시정 및 건의)	소관부서	처리결과
계	3건 (완료 2 , 추진중 1 )		
1	○ 소태구룡지구 용수개발사업관련 미 경지정리지구 대책강구	농 정 과	추진중
2	○ 충주사과 무농약 재배 시범사업 사후관리 철저	친환경농산과	완 료
3	○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복구 철저	산림녹지과	완 료

##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기	99회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처리부서	농 정 과	처리결과	추진중
----	-----	-----	---------	------	-------	------	-----

### □ 시정 및 건의사항

- 소태 구룡지구 용수개발사업관련 미 경지정리지구 대책 강구

### □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 ○ 경지정리사업의 추진방향

- 일반 경지정리사업 : 50ha미만 사업비 100% 지방비로 부담  
※ 2004년부터 국비지원 지원
-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50ha이상 국비 80% 지방비 20% 부담

#### ○ 소태 구룡지구 중규모용수개발사업

- 규 모 : 봉리면적 120ha (경지정리 대상면적 : 84ha)
- 사 업 비 : 13,427백만원 (국비 100%)
- 사업기간 : 2002. 12 ~ 2006. 12
- 공 정 율 : 46 %
- 시 행 자 : 농업기반공사 충주제천지사장

#### ○ 구룡지구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 200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배정 등의 사유로 2년정도 사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경지정리사업은 예정지조사, 기본조사지구 선정 절차를 거쳐 추진
- 용수개발사업이 준공되는 시기에 경지정리 예정지 조사대상에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기	회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처리부서	친환경농산과	처리결과	완료
<b>□ 충주사과 무농약재배 시범사업 사후관리 철저</b>							
○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충주사과 무농약 재배농가 지원사업은 그 취지가 친환경농법을 통한 충주사과의 상품성을 제고하여 사과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나							
○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시 당해 농가는 물론, 인근농가까지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바 시에서는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사례가 없도록 시범농가에 대한 철저한 병해충 관리와 생육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b>□ 처리결과</b>							
○ <b>사업개요</b>							
• 사업량 : 3.0ha (시범사업)							
• 사업대상자 : 6농가(친환경농업 과수연구회 - 회장 홍승호) ※소태면 4호, 가금면 1호, 용탄동 1호							
• 사업비 : 60백만원 (시비 42 자담 18)							
○ <b>주요 처리결과</b>							
• 과수재배농가 선진농업기술 현장교육(상주) : '05년 1월							
• 석회유황합제 제조기술 현장교육(상주) : '05년 3월							
• 사과 무농약 재배 인칼균사용농법 현장 평가회 : '05년 7월 1일 - 장소 : 용탄동 이상문농가 과수재배포장 - 참석인원 : 20명(인칼균연구소 및 농업인) - 주요내용 : 무농약사과 재배 병해충관리 및 생육관리 지도							
• 사과 무농약 재배농가 중간 평가회 : '05년 7월 6일 - 장소 : 무농약 사과 재배농가 전포장 - 참석인원 : 10명(무농약재배농가 6명, 공무원 4명) - 주요내용 : 무농약 재배 병해충관리 및 생육관리 지도							
○ 주요성과 :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획득 ⇒ 무농약 0.9ha / 1농가							

## 세부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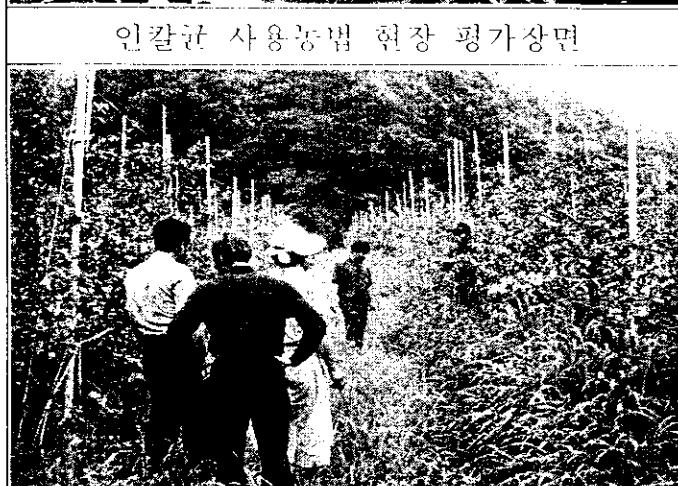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합계		60,000	42,000	18,000	
○ 유기질비료	1,800포	10,800	7,560	3,240	0.1ha당 60포
○ 석회유황합제제조기	1식	8,610	6,027	2,583	공동이용
○ 병해충관리자재	7종				
• 성페로몬트랩	6세트	1,080	756	324	1세트 0.5ha
• 교미교란기, 존트랩	2종	5,130	3,591	1,539	교미교란: 120개, 존트랩 3개
• 유화등	24개	7,200	5,040	2,160	0.5ha당 4개
• 석회보르드액(유황)	600병	9,000	6,300	2,700	0.1ha당 20병
• 기계유제(식물성)	36통	900	630	270	0.5ha당 6통
• 기타 병해충자재	180병	5,400	3,780	1,620	0.5ha당 6병
○ 식물추출용액비	360병	11,880	8,316	3,564	0.1ha당 12병

## 무농약 사과재배 농가현황

(단위 :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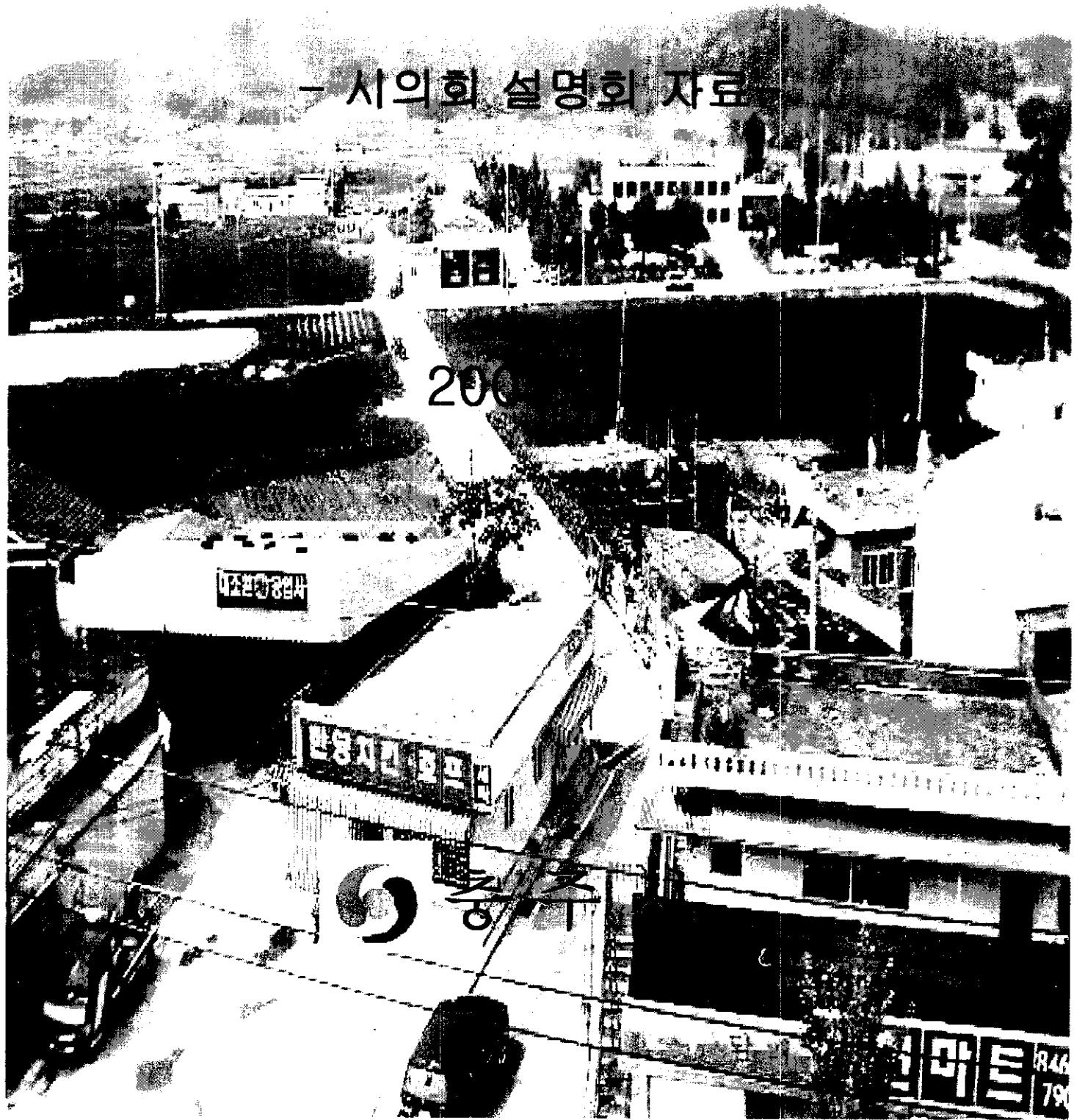
읍면동	사업대상자		경지면적	과 재배면적	무 농 약 신청면적	저농약인증 재배면적	비 고
	성 명	주 소					
계	6명		13.7	11.8	3.4	12.1	
소태면	홍승호	소태면 동막리 8-1	2.3	1.7	0.5	0.8	
소태면	김성진	소태면 양촌리 253	1.1	0.4	0.4	0.4	
소태면	최창섭	소태면 오량리 180	3.2	3.2	0.6	3.2	
소태면	허만영	소태면 오량리 187	2.6	2.0	0.5	1.5	
가금면	김영우	문화동 1905	1.3	1.3	0.5 (재배: 0.9)	1.3	0.9
목행동	이상문	용탄동 872	3.2	3.2	0.5	3.2	

## 무농약 사과재배농가 생육관리 지도현장

	
인찰군 사용농법 현장 평가장면	인찰군 사용농법 현장 평가장면
	
무농약 재배농가 중간평가 장면(홍승호)	무농약 재배농가 중간평가 장면(김영우)
	
석회유황합제 제조기	해충을 유인하는 유아등 설치장면

# 충주 이류면 대소리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시의회 설명회 자료



##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기	99회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처리부서	산림녹지과	처리결과	완료
----	-----	-----	---------	------	-------	------	----

### □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복구철저

1. 정토사 진입로의 경우 배수로가 진입도로면보다 높아 수해피해가 우려됨으로 재시공  
토록 조치하기 바람.
2.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철저
3. 탄금호주변 및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산지  
전용허가지의 정기적인 감시·감독 체계를 확립하기 바람

### □ 처리결과

- 1) 수허가자(정토사 최주석)에게 2005. 7월 중으로 보완조치토록 통보
  - 배수로가 진입도로면보다 높게 된 것은 진입로포장을 위함이었으나 자금부족으로 포장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방치
  - 노면으로 빗물이 흐르지 않도록 응급조치 완료(물님이 방지턱 3개소 설치)
  - 현재 수허가자가 자금 확보중에 있고 자금확보 되면 조속히 완료(10월 25일한)
- 2)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의 복구에 있어서 원상에 가깝도록 복구작업 철저
  - 불법 산림훼손된 지역의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복구작업시 다양한 공법을 적용하여  
현지가 원상에 가깝게 되도록 복구
  - 복구비를 예치 받을 때 m<sup>2</sup>당 기준 복구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현실복구비를 예치 받고 있음
- 3)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강구 및 산지전용허가지의 정기적인 감시, 감독 체계확립
  - 산지전용처리지침 제정(6/24) 시행중
  - 직원 담당 읍·면 지정하여 산지전용허가·신고지 월1회 이상 점검
  - 산지전용허가지내 불법 및 위법행위 집중 단속

## 가금면 정토사 응급조치 관련



우수가 노면으로 흐르지 않게 응급조치(3개소)



기존배수로가 진입도로보다 높게 시공

2005. 10.

제101회 임시회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 건 소

##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기	99회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처리결과	완료
----	-----	-----	---------	------	-------	------	----

### □ 노인전문병원 신축업무 대행 소홀

-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의 규모를 당초 신축업무 대행 위·수탁계약서상 1,112평에서 1,196평으로 건축허가가 되고, 도로개설 비용의 전용 등 노인전문병원 신축업무 대행 위·수탁계약 업무는 물론 공사에 따르는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2005년도 제1회 추경에서 3억 6천6백만원을 추가 지원케 한 바 있음.  
⇒이번과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위·수탁업무에 대한 법규연찬 노력과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요구

### □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 건축허가 시 건축면적 변경
  -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업무연찬 실시
  - 분기별 1회 이상 직무교육 실시
  - 업무변경 시 당초계획과의 변경사항 유무 검토 등 업무처리 철저
- 도로개설 비용의 전용에 따른 3억6천6백만원 추가지원
  - 위·수탁계약 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으며,
  - 공사추진 단계별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문제예상 시 사전검토로 계획성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음
- 업무소홀 공무원에 대한 조치
  - 업무처리 시 관련 공무원 행정조치(2005. 7. 29)
    - 불문경고 : 1명(보건행정담당)
    - 훈계 : 3명((전)보건과장, 업무담당자 2명)

2005. 10.

제101회 임시회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 지적사항 처리 결과

물관리사업소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목록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처리요구사항(시정 및 건의)	소관부서	처리결과
계	2건(추진중 2)		
1	○ 요도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시공 철저	물 정 책 과	추진중
2	○ 하수처리장 방류수 처리 철저	하수처리과	추진중

##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기	99회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처리부서	물정책과	처리결과	추진중
----	-----	-----	---------	------	------	------	-----

### □ 요도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시공철저

- 호안조성 후 고수부지에 꽃창포외 14종의 관목류 및 초화류를 식재토록 계획하고 있는데 충주대앞은 우기시 매년 2~3일은 침수되는 실정으로 산철쭉, 자산홍, 조팝나무 등을 식재시 침수로 인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고
- 토공 정리 후 우기시 세굴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정화사업 완공 후 한강수계 수질보전 민간단체 등을 이용한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 관목류(산철쭉, 자산홍, 조팝나무)는 전문가 자문에 따라 매년 2~3일 침수되는 지역에는 식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9. 30 설계변경 집행시 삭제하였음
- 우기시 세굴등의 예방을 위하여 장비를 이용 고수부지 및 범면에 다짐을 실시하여 금회 장마 및 국자성 호우에도 세굴 및 유실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05.10월부터 식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예방활동을 강화 하겠음
- 한강수계 수질보전 민간단체 등을 이용한 사후관리 대책은 식재 및 공사 완료전에 단체별 책임구역을 지정, 초화류 관리 및 주변 청소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음

# 사 진 대 지



국원교 상류 우안



국원교 상류 좌안

##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기	99회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처리부서	하수처리과	처리결과	추진중
----	-----	-----	---------	------	-------	------	-----

### □ 시정 및 건의사항

- 하수처리장 방류수 처리 철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가 봉방배수펌프장 유수지로 유입되고 유수지내의 고인물이 부패되어 악취발생 및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어 주변 생태환경을 해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수 처리장 방류수 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 충주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봉방배수펌프장 유수지로 방류시키고 있는 것은 하천으로 직접 방류시 하천오염이 우려되어, 봉방배수펌프장 유수지로 방류하여 한번더 정화 시킨후 상등수 방류로 하천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함임
- 유수지 물로 인한 주변생태환경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충주·교현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서 봉방배수펌프장 위 유수지에 습지조성 공사가 시행중으로, 완료시 유수지 물을 정화하여 하천으로 방류할 계획임
-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방류수로 인한 주변생태환경이 피해가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7
----------	-----

발의일시: 2005. 10. 11.  
발의자: 의회운영위원회

## 1. 제안이유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제명을 띄워쓰기 기준에 맞게 표기
  -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리
-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
  - 현행 1일에 70,000원 → 100,000원으로

##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 4.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 5. 기타 참고자료 : 없음

## 충주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원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원과 보조 활동비 월 20만원을 의정활동비로 매월 지급한다.

②의정활동비는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기수당)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1일 10만원으로 한다.

②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회의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8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의정활동비 지급)</u>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u>의정활동비</u>를 지급한다.</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 ..... ..... .....</p> <p><u>제2조(의정활동비)</u> ①의원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을 의정활동비로 매월 지급한다. ②의정활동비는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 할 계산하여 지급한다.</p>
<p><u>제3조(회기수당 지급)</u> 의원이 회기중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실제 출석한 경우와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한 현지 조사활동 등에 참석한 경우에 회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p>	<p><u>제3조(회기수당)</u>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 수당은 1일 10만원으로 한다. ②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p>
<p><u>제6조(의정활동비지급기준)</u>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으로 하고, 매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p>	<p><u>&lt;삭 제&gt;</u></p>
<p><u>제7조(회기수당 지급기준)</u>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회의 출석일수 1일에 70,000원으로 한다.</p>	<p><u>&lt;삭 제&gt;</u></p>
<p><u>제8조 (생략)</u></p>	<p><u>제6조 (현행 제8조와 같음)</u></p>
<p><u>제9조 (생략)</u></p>	<p><u>제7조 (현행 제9조와 같음)</u></p>
<p><u>제10조 (생략)</u></p>	<p><u>제8조 (현행 제10조와 같음)</u></p>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회기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5.12.30, 2003.12.18, 2005.4.27> [전문개정 1995.7.1]

[별표 6] <개정 2005.8.5>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제15조관련)

구 분	회기수당 지급범위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110,000원 이내	별표 7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 1)의 범위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일 100,000원 이내	